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증가 및 수상레저 기반의 확대 등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957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3조)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지정하는 운항구역의 종류와 시행령의 제정목적, 법의 적용제외 범위에 대해서 규정

나.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안 제4조~제13조)

- 1) 등록의 요건,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록의 경정 등 등록과 관련한 행정기준을 정함
- 2) 등록·변경등록·압류등록과 관련한 신청절차·첨부서류, 행정처리기준 등을 규정함
- 3) 등록서류를 보존·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원부의 세부 작성방법, 등록원부의 열람·발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4) 시험운항허가의 신청, 허가증의 발급 및 반납, 허가증 기재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다.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안 제14조~제16조)

안전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검사대행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대행업무에 대한 보고·감독에 관한 내용과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라. 제4장 보칙(안 제17조~제21조)

안전검사 대행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대상과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저장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구역의 종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
2. 한정연해구역(제1호에 따른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기구의 최고 속력으로 2시간 이내 왕복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내수면

제3조(적용 제외)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톤 이상의 모터보트

2.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거나, 추진기관 30마력 미만(kW단위의 경우 22kW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의 고무보트
3. 총톤수 20톤 이상의 세일링요트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4조(등록의 요건) ①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2.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중 대표자, 공동소유자별 지분율 등이 기재된 서류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서에 제3자가 직접 기명날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6. 등록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등록번호의 부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

록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를 등록 순서대로 부여해야 한다.

제7조(등록원부의 작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동일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③ 등록원부의 세부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서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등록서류의 보존·관리) ① 등록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등록원부: 말소등록한 날로부터 10년
2.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3년(신규등록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0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매매·증여·상속 등의 소유권 변경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명칭의 변경
4.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원, 운항구역,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
5. 용도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양도증명서, 증여증서 등 소유권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나. 가족관계등록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명칭이 변경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

라. 안전검사증 사본(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11조(압류등록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촉탁기관, 압류원인, 압류등록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해제를 촉탁받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촉탁기관, 압류 해제 원인, 압류등록의 해제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록 또는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촉탁기관, 압류의 등록 또는 해제의 원인, 압류의 등록일 또는 해제일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등록의 경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착오나 누락이 등록담당 공무원의 과오(過誤)로 인한 경우: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착오나 누락이 등록담당 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경정한다.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신청서에 등록 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경정신청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험운항의 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이하 “시험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운항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운항 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시험운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시험운항 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시험운항 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②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시험운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험운항허가의 기간 및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운항 기간: 7일 이내(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한다)
2. 시험운항 구역: 출발지로부터 직선으로 10해리 이내

④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운항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제14조(검사대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조직도와 전국 단위의 검사업무 이행계획서를 포함한다)
3.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행자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5조(안전검사 대행업무의 보고·감독) ① 검사대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대행실적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부터 14

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대행 업무의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대행자의 사무실, 검사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대행자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검사대행자의 수,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원 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시험운행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③ 해양경찰청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는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시험운행허가의 신청절차, 기간, 구역 및 허가증 반

납: 2022년 1월 1일

2.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

분 기준: 2022년 1월 1일

제5장 벌칙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서류의 보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일련번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등록일련번호는 폐지하고, 등록번호판 번호는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번호로 본다.

제5조(검사대행자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을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1일까지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별표 9에 따라 받은 업무정지 처분은 이 영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부여기준(제6조 관련)

1. 번호판의 기구의 종류, 명칭 및 일련번호는 다음과 같다.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일련번호	일련번호
모터보트	MB	00 ~ 99	0001 ~ 9999
수상오토바이	PW	00 ~ 99	0001 ~ 9999
고무보트	RB	00 ~ 99	0001 ~ 9999
세일링요트	YT	00 ~ 99	0001 ~ 9999

2. 일련번호는 등록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부여하고,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등의 사유로 공백이 되는 번호는 그대로 비워 둔다.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세부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제8조 관련)

1. 등록원부의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적어야 한다.
2. 등록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각각 등록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3.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4. 법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 등록을 한 사유, 내용,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갑등록원부의 최종소유자란에는 모든 공동소유자가 합의하여 지명한 1명의 대표자를 적고, 사항란에 각 공동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분비율을 적어야 한다.
5.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검사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있는 안전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검사대행자란에 검사대행자를, 사항란에 안전검사의 종류 및 내용(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한한다)을,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가. 저당권등록이 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일련번호
 - 나.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사실
 - 다. 그 밖에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세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공매공고, 경매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 등 관공서의 촉탁이 있는 경우 촉탁일, 촉탁기관, 촉탁내용 등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
 -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압류등록의 해제
 - 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등록의 말소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검사원 3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관·기계 또는 조선·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선박검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만 해당한다) 및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후 선박의 기관(機關) 운용 및 정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라.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업무 또는 선박건조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기준

구분	내용
기본시설	가. 민원실 및 검사행정실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나. 상담실과 문서고 면적의 합: 15제곱미터 이상
부대시설	가. 주차장: 10대 이상 주차 가능할 것 나. 화장실: 남·여 구분이 되어 있을 것

3. 장비기준

구분	설비
주요장비	가. 추진기관(선외기) 검사장치 나. 선체두께 측정장비(초음파 두께 측정기 등) 다. 길이측정기 라. 경사도 측정장비
일반장비	가. 마이크로미터 나. 절연저항측정기 다. 버니어캘리퍼스(Vernier Calipers) 라. 반사경 마. 청음기(聽音機) 바. 회전 측정기 사. 온도 측정기

	아. 디지털카메라 자. 테스트 해머(Test Hammer) 차. 두께 측정용 게이지 카. 틈새 게이지 타. 속도측정장치(GPS, DGPS 등) 파.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	--

4. 비고: 검사대행자의 분사무소(지부)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검사 관련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5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과징금 부과금액 (단위: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검사대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1,000	-	-
2. 검사대행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3호	200	600	1,000
3. 검사대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4호	600	1,000	-
4. 검사대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5호	200	600	1,000

※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는 별표 4의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 기준에 따른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범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50
나.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50
다. 수상레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	50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100
마.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의 또는	법 제32조제1	100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	항제5호	
바. 안전검사원이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	100
사.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1호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1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2호	20
자.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3호	30
차.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행의 목적 및 운항구역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장비를 비치 또는 보유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4호	30
차.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행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5호	10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32조제2항제6호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5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7호	10
파.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8호	50
하.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9호	50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연 락 처	(032) 835 - 2351

